

# 단체표준 인증심사 기준

해당표준번호                      SPS-KHFC 002-2074

---

해당표준명                        공동주택용 반침장

---

제정연월일                        2014 년 8 월 20 일

---

개정연월일                        2021 년 1 월 18 일

---

한국주택가구협동조합

## 1. 품질경영 관리

심사사항	구비요건
1)사내표준화(社內標準化)· 품질경영의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영책임자는 표준화 및 품질경영을 합리적으로 추진해야 한다.</li> <li>○기업의 사내표준 및 관리규정은 단체표준을 기반으로 회사 규모에 따라 적합하게 수립하고 회사 전체 차원에서 적용해야 한다.</li> <li>○품질경영의 추진계획은 해당 단체표준 및 인증심사기준의 요구 수준이상으로 보증할 수 있도록 입안하여야 한다.</li> </ul>
2)사내표준화와 품질경영의 도입 및 확산을 위한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품질경영을 총괄하는 품질경영부서(임직원 10인 이하 기업은 품질관리담당자)는 독립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li> <li>○제안활동 또는 소집단 활동 등을 통해 품질개선 활동을 실시하고, 사내표준화와 품질경영 활동 전반에 대해 자체 점검을 1년 이내의 주기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경영에 반영하여야 한다.</li> </ul>

## 2. 자재 관리

심사사항 주요자재명	구비요건			
	검사항목	자재품질기준	검사방법	이행사항
1.목재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겉모양</li> <li>2) 치 수</li> <li>3) 함수율</li> </ol>	자재의 품질기준 및 안전성은 생산 제품의 품질이 단체표준 수준 이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자재의 검사방법 및 항목은 제품의 품질이 단체표준 수준 이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품질 관리기법을 활용하여 정하여야 한다.	사내표준에 의하여 자재를 인수할 때의 품질검사(이하 이표에서 "인수검사"라 한다) 및 자재관리를 하고, 자재를 관리하는 자가 그 결과를 활용하고 있어야 한다.
2. 목질재료 (합판,파티클보드 섬유판, 화장합판 파티클보드치장판 치장 섬유판 등)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겉모양</li> <li>2) 치 수</li> <li>3) 함수율</li> <li>4) 폼알데하이드 방출량</li> <li>5) 안전성(유해성)</li> </ol>			
3. 합성수지 성형품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유기질섬유의양</li> <li>2) 두께</li> <li>3) 겉모양</li> </ol>			
4.인테리어시트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겉모양</li> <li>2) 두께</li> <li>3) 인장강도</li> <li>4) 인열강도</li> <li>5) 신율</li> <li>6) 내약품성</li> <li>7) 광택</li> <li>8) 안전성(유해성)</li> </ol>			

심사사항 주요자재명	구 비 요 건			
	검 사 항 목	자재품질기준	검 사 방 법	이행사항
5. 저압 메라민 (LPM: Low Pressure Melamine)	1) 겉모양 2) 수지함유량 3) 원지무게	자재의 품질기준은 생산 제품의 품질이 단체표준 수준 이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자재의 검사방법은 제품의 품질이 단체표준 수준 이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품질 관리기법을 활용 하여 정해야 한다.	사내표준에 의하여 자재를 인수할 때의 품질검사(이하 이표에서“인수검사”라 한다) 및 자재관리를 하고, 자재를 관리하는 자가 그 결과를 활용하고 있어야 한다.
6. 경 첩	1) 겉모양 2) 치 수 3) 내식성 4) 내구성			
7. 손잡이	1) 겉모양 2) 치 수 3) 내식성 4) 내구성			
8. 악세사리 및 조립부품(스크류 등)	1) 겉모양 2) 치 수 3) 내식성 4) 내구성			
9. 접착제	1) 겉모양 2) 종 류 3) 접착강도			
10. 도 료	1) 겉모양 2) 종 류 3) 성 분			

- 비고 1. KS표준 표시제품 또는 단체표준 표시품은 인수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2. 양질의 자재라고 인정될 때에는 공급하는 업체의 시험성적서로 인수검사를 대신할 수 있다.
  3. 부품을 자체에서 제조하는 경우에는 인수검사를 공정관리로 대체할 수 있다.
  4. 제품의 종류, 공정의 특수성 및 제조 기술의 개발로 자재를 대체 또는 생략하거나 검사항목을 증감할 수 있다.
  5. 위 자재는 생산되는 제품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 한다.

### 3. 공정 · 제조설비관리

심사사항 주요 공정명	구 비 요 건			
	검사 또는 관리항목	검사 또는 공정관리방법	이 행 사 항	제조작업표준
1) 절 단	① 겉모양 ② 치수 (관리항목) ※ 날의 교환시기	제품의 품질이 단체표준 수준 이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 기법을 적용하여	사 내 표 준 에 따라 검사 관 리를 실시하 여 그 기록 을 활용하고	각 공정에 대하 여 사용설비, 작 업방법, 작업 조 건, 작업상의 유 의사항 등을 규 정하고 이에 따 라 실시하고 있 어야 한다.
2) 접 착	① 겉모양/접착상태 (관리항목) ※ 접착조건	중간검사 또는 공정관리 방법을 규정 하고 있어 야 한다.	공정관리자가 규정대로 실 시할 수 있어 야 한다.	
3) 가 공	① 겉모양 ② 치수 (관리항목) ※ 공구의 교환시기	단, 각 공정의 관 리항목은 해당공 정의 제조설비 또는 작업조건에		
4) 도 장	① 겉모양 ② 도막두께 (관리항목) ※ 도장조건	따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설정 관리하여야 한다.		
5) 조립 및 설치	① 겉모양, ② 조립 및 포장 상태 ③ 설치상태/점검 (관리항목) ※ 조립순서, 설치방법			
<p>비 고 1. 제품의 종류나 공정의 특수성 및 제조기술의 개발로 인하여 공정수를 증감하거나 검사 또는 관리항목을 증감할 수 있다.</p> <p>2. 도장 등 일부 공정에 있어서 외주를 주어도 좋으나, 이때에는 외주관리규정을 정 하고 이를 실시하고 있어야 한다.</p> <p>3. 외주품의 제품검사를 주 공장 자체에서 실시하여 단체표준수준이상으로 품질이 유 지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관리를 하여야 한다.</p>				

주요 설비명	구비요건
1. 절단설비 2. 접착설비 3. 가공설비 4. 도장설비 5. 조립설비 6. 집진설비	1. 당해 제품 생산에 적합한 제조설비를 보유하고 설비의 성능유지를 위한 점검·보수·운환관리 등의 관리규정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이에 따라 실시하고 있어야 한다.  2. 지정된 설비관리자가 설비관리규정에 의하여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p>비 고 : 1. 몸체절단설비는 판넬컷터 또는 자동제어장치를 갖춘 설비를 보유하여야 하며, 생산규모에 따라 기능·성능 및 수량은 달리 할 수 있다.</p> <p>2. 구멍가공설비는 부품별 가공에 적합한 충분한 설비를 보유하여야 한다.</p> <p>3. 공정관리 단서규정에 따라 필요하지 않은 설비는 갖추지 않아도 된다.</p>	

#### 4. 제품 관리

심사사항	구 비 요 건		
검사항목	제품의 품질기준	검 사 방 법	이 행 사 항
SPS - KHFC 002 - 2074의 검사항목	1. 해당제품의 품질에 대한 사내표준은 단체 표준 수준 이상이어야 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2. 조립 및 설치 방법과 주의사항	해당제품의 검사 방법은 제품의 품질이 단체표준 수준 이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기법을 적용하여 규정하여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품의 품질에 대한 사내표준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고 그 기록을 공정개선 및 제품 품질향상에 활용하고 있어야 한다.</li> <li>○ 사내표준화와 품질경영체제 전반에 대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li> <li>○ 시험검사자가 표준 및 사내표준에 따라 시험검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li> <li>○ 제품의 조립을 외부(현지)에서 행하는 경우는 설치기준 및 방법, 주의사항, 설치 후 점검방법 등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야 한다.</li> <li>○ 설치 후 점검을 실시하고 그 기록을 공정개선 및 제품 품질향상에 활용하고 있어야 한다.</li> </ul>
비고 : 1. 중간검사와 겹치는 제품검사항목은 중간검사로 같음할 수 있다. 2. 제품이 단체표준 수준 이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일정한 주기를 정하여 시험한 외부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보유한 경우 그 시험항목에 대해서는 제품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3. 심사원은 제품 시험·검사자의 시험 수행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제품의 주요 검사항목에 대해 현장 입회시험을 실시 할 수 있다.			

5. 시험·검사설비 관리

주요 설비명	구비요건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치수 측정기기</li> <li>2. 안정성 시험설비</li> <li>3. 선반판 지지구강도 시험기기</li> <li>4. 선반판 휨 시험기기</li> <li>5. 걸이용 레일 지지구의 강도</li> <li>6. 걸이용 레일의 휨</li> <li>7. 상판 및 바닥판 강도 시험기기</li> <li>8. 여단이문의 강도 시험설비</li> <li>9. 여단이문의 내구성 시험설비</li> <li>10. 서랍 및 레일의 강도 시험설비</li> <li>11. 서랍 및 레일의 내구성 시험설비</li> <li>12. 서랍의 급속 개폐 시험설비</li> <li>13. 서랍의 바닥판 변형 시험기기</li> <li>14. 문짝 열냉반복 시험설비</li> <li>15. 문짝 수축과 열저항 시험설비</li> <li>16. 손잡이 부착강도 시험설비</li> <li>17. 함수율시험기</li> <li>18. 도장막 시험설비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8.1 도장막 밀착 시험기기</li> <li>18.2 도장막 경도 시험기기</li> <li>18.3 도장막 방청성 시험기기</li> </ol> </li> <li>19. 촉진내후성 시험설비</li> <li>20. 화장판 시험설비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1 화장판 내마모성 시험기기</li> <li>20.2 화장판 내열수성 시험기기</li> <li>20.3 화장판 내 열 성 시험기기</li> <li>20.4 화장판 내오염성 시험기기</li> <li>20.5 화장판 내끓임성 시험기기</li> </ol> </li> <li>21. 염수분무 시험기</li> <li>22. 경첩 내구성 시험기</li> <li>23.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시험기</li> <li>24. 휘발성유기화합물 방출량 측정 및 분석시험 설비</li> </ol>	<p>○. 해당 표준에 규정되어 있는 품질특성과 자재 및 제품을 검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검사 설비를 보유하고 설비의 정밀도, 정확도 유지를 위하여 국가 표준기본법 제3조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교정을 실시 하되 사용빈도, 측정기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회사의 실정하고 이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p> <p>○. 정밀도 및 정확도를 시험검사하기 위하여 시험 검사 설비의 설치장소가 적정하고, 시험검사설비의 사용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어야 하며 시험검사설비 관리자는 시험검사설비의 관리규정에 따라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p>
<p>비 고</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20.1항 (화장판 내마모성 시험설비) 및 20.4항(화장판 내오염성 시험설비) 화장판 또는 화장면 사용 시에 한함.</li> <li>2. 20.2항(화장판 내열수성 시험설비), 20.3항(화장판 내열성 시험설비), 20.5항(화장판 내 끓임성 시험설비)은 두께 1.1 mm 이상의 화장판 또는 화장면 사용 시에 한함.</li> <li>3. 11. 항의 서랍 및 레일의 내구성 시험설비는 서랍레일 및 미단이문 레일을 포함한다.</li> <li>4. 시험설비는 외부공인기관(KOLAS포함)과의 사용계약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또한 외부공인기관(KOLAS포함)의 시험성적서로 관리하는 경우, 보유하고 있지 않아도 된다. 이때에는 검사 Lot별로 반드시 외부공인기관 시험성적서를 보유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인수검사, 공정 및 제품의 검사에 필요한 제품의 치수, 자재의 두께 등을 측정하기 위한 측정 장비는 자체에서 보유 하여야 한다.</li> </ol>	

## 6. 소비자 보호 및 환경·자원 관리

심 사 사 항	구 비 요 건
1) 소비자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비자가 제기한 불만사례를 경로를 추적하여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 및 재발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li> <li>○ 소비자에게 제품의 사용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보상에 대해 처리방법을 규정해야 한다.</li> </ul>
2) 환경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체표준에 따른 제품 요구사항의 적합성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작업환경을 사내표준에 규정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li> <li>○ 청정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활동이 회사 전체적으로 실행되고 지속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li> <li>○ 작업능률의 향상과 종업원의 안전 및 복지를 고려한 작업환경을 갖추어야 한다.</li> </ul>
3) 자원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종업원에게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고, 생산·품질경영부서의 경영간부에 대한 표준화 및 품질경영 전문교육기관에서의 교육훈련 실적이 있어야 한다.</li> <li>○ 업종과 규모에 적합하고, 품질경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자격 있는 품질관리 담당자와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li> <li>○ 품질관리 담당자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내표준화와 품질경영에 대한 계획의 입안 및 추진</li> <li>- 사내표준의 제정·개정 등에 대한 총괄</li> <li>- 상품 및 가공품의 품질수준 평가</li> <li>- 각 공정별 사내표준화 및 품질관리의 실시에 관한 지도·조언 및 부문 간의 조정</li> <li>- 공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해결과 조치, 개선대책에 관한 지도 및 조언</li> <li>- 종업원에 대한 사내표준화 및 품질경영에 관한 교육훈련 추진</li> <li>- 부품을 제조하는 다른 업체에 대한 관리에 관한 지도 및 조언</li> <li>- 불합격품 또는 부적합 사항에 대한 조치</li> <li>- 해당 제품의 품질검사 및 시험업무 관장</li> </ul> </li> </ul>

## 7. 제품 시험을 위한 샘플링 방식

번호	검사항목	로트의 크기	시료의 크기 (n)	판정기준		비고
				Ac	Re	
	SPS- KHFC 002-2074 의 검사항목	재고량	2 (대표적인 것)	0	1	

비고 1. 로트는 공장별로 관리하고 있는 로트로 한다.

2. 인증심사 시 시료채취는 재고량 중에서 주요 구성품인 옷걸이봉, 선반, 서랍 등이 포함된 제품 1종에 대하여 샘플링하고 n=2로 한다. 단, 여닫이문의 내구성 시험, 서랍 및 레일의 내구성 시험은 n=1로 한다.
3. 정기심사 및 시판품조사 시 시료채취는 재고량 중 제품 1종에 대하여 샘플링하고 n=1로 한다.
4. 제품의 구성품들이 구조 및 재질이 동일하다고 판단될 때 제품여닫이문의 내구성 시험, 서랍 및 레일의 내구성시험은 구성품 중 대표적인 제품을 선택하여 1회 시험한다
5. 채취한 시료(제품)에 제품으로 시험이 곤란한 성능시험 항목 중 목질재료(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화장합판, 파티클보드치장판, 치장 섬유판 등)시험, 금속부도막시험, 화장판 시험, 경첩의 내식성 및 내구성 시험과, 인테리어시트, 목질기공재, 인조대리석의 안전성 시험 등이 포함될 경우는 해당 성능시험에 필요한 원부자재를 별도로 채취한다. 단, 원·부자재의 시료는 시료로 채취한 제품에 구성되어 있는 것과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6. 제품심사 결과, 제품의 안전성 시험항목에 대한 부적합이 발생 시, 1개월 내 시정조치 후 현장 확인 및 추가시험을 1회에 한하여 실시하고, 표준 미달사항에 대해서는 경결함, 중결함, 치명결함으로 구분한다.



### 9. 단체표준 인증마크 표시방법

상품의 단위	표시장소	표시방법	표시내용
제품마다	단체표준 마크표시 및 제조자 표시는 몸체전면에 잘 보이는 곳에 하여야 하며 위판의 표시는 회사 실정에 따라 할 수 있다.	1. 금속 또는 플라스틱 바탕에 인쇄하거나 금속 또는 플라스틱 바탕에 각인 또는 돌출  2. 인쇄 또는 각인	1. 단체표준 표시도표 단체표준마크 지름 10 mm 이상 2. 표준명 및 표준번호 3. 제조연월일 4.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5. 인증단체명 6. 단체표준의 표시사항
<p>비고 1. 반침장의 인증마크는 제품의 표면(몸체, 문짝)에 각각 대표되는 주요 구성재의 문짝 등 전면의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야 하며, 기준에 따른 표시내용은 외관상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부착하여야 한다.</p>			

### 10. 제품의 인증구분

단체표준번호	표준명	종류 또는 등급
SPS-KHFC 002-2074	공동주택용반침장	-